

의안번호	제 175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발 의 자	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4월 9일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박병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
----------	-----

발의연월일 : 2019년 4월 9일

발의자 : 박병진, 이수완, 윤남진,
김기창, 연종석, 오영탁,
이옥규

1. 제안이유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 화재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공공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와 협의

라. 입법예고 : '19. 2. 14. ~ '19. 2. 19.(의회홈페이지)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4.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통해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리발주) 공공건축물 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에
게 다른 건설 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특성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5.8.19.,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

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24.>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